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3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자치구의 행정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과 측정단위를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
- 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관련 사항을 조정함.
 - 측정항목의 측정단위를 개선 및 추가함(안 별표 1).
 - 측정단위의 수치산정기준을 보완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8. 17.~9. 6.)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특별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⑧ 기초생활비의 측정단위란 중 “기초생활수급자수”를 “저소득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호 ⑨ 보육사업비의 측정단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유아수

공공보육시설정원

별표 2 제4호의 수치산정기준란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로 한다.

별표 2 제8호의 측정단위란 중 “기초생활수급자수”를 “저소득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호 수치산정기준란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공공보육시설정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명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p> <p>① ~ ④ (생 략)</p> <p>⑤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특별교부금</u>을 신청할 수 없다.</p> <p>[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 (제8조제2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분야</th> <th style="width: 40%;">측정항목</th> <th style="width: 40%;">측정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1. ~ 5. (생 략)</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6. 사회복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⑦ 일반복지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대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⑧ 기초생활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u>기초생활수급자수</u></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⑨ 보육사업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⑩ 노인복지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인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⑪ 아동복지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동청소년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⑫ 장애인복지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장애인수</td> </tr> <tr> <td colspan="3">7. ~ 11. (생 략)</td> </tr> </tbody> </table>	분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1. ~ 5. (생 략)			6. 사회복지	⑦ 일반복지비	세대수	⑧ 기초생활비	<u>기초생활수급자수</u>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	<u>< 신 설 ></u>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	⑫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7. ~ 11. (생 략)			<p>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p> <p>-----</p> <p>----- <u>특별조정교부금</u>-----.</p> <p>[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 (제8조제2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분야</th> <th style="width: 40%;">측정항목</th> <th style="width: 40%;">측정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1. ~ 5. (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6. -----</td> <td style="text-align: center;">⑦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⑧ -----</td> <td style="text-align: center;"><u>저소득취약계층</u></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⑨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공공보육시설정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⑩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⑪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⑫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3">7. ~ 11.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분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1. ~ 5. (현행과 같음)			6. -----	⑦ -----	-----	⑧ -----	<u>저소득취약계층</u>	⑨ -----	-----	<u>공공보육시설정원</u>	⑩ -----	-----	⑪ -----	-----	⑫ -----	-----	7. ~ 11. (현행과 같음)		
분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1. ~ 5. (생 략)																																															
6. 사회복지	⑦ 일반복지비	세대수																																													
	⑧ 기초생활비	<u>기초생활수급자수</u>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																																													
		<u>< 신 설 ></u>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																																													
⑫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7. ~ 11. (생 략)																																															
분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1. ~ 5. (현행과 같음)																																															
6. -----	⑦ -----	-----																																													
	⑧ -----	<u>저소득취약계층</u>																																													
	⑨ -----	-----																																													
		<u>공공보육시설정원</u>																																													
	⑩ -----	-----																																													
	⑪ -----	-----																																													
⑫ -----	-----																																														
7. ~ 1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p>			<p>[별표 2]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p>		
측정단위	수 치 산 정 기 준	단위	측정단위	수 치 산 정 기 준	단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생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u>초·중·고등학교 학생수</u>	명	4. ----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u>초·중·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 학생수</u>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기초생활수급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u>	명	8.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u>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u>< 신 설 ></u>			10. 공공보육시설정원		
10.노인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65세 이상 인구수	명	10. 공공보육시설정원	<u>「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u>	명
11. 아동청소년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6세-24세 인구수	명	11.-----	-----	--
12. 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수	명	12.-----	-----	--
13. 도로시설물연장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로서 교량,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일반터널의 연장	m	13.-----	-----	--
14. 도로면적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면적	m ²	14.-----	-----	--
15. 미개설도로면적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시설로서, 자치구청장이 공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미포장도로 및 미개설도로의 면적	m ²	15.-----	-----	--
16. 자동차대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치구에 등록된 자동차대수	대	16.-----	-----	--
17. 도시계획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립 면적	km ²	17.-----	-----	--
18. 녹지대면적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일반녹지, 분리대, 수벽, 수림대 등 녹지대 면적	m ²	18.-----	-----	--
19. 하천연장	「하천법」에 의한 당해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길이	m	19.-----	-----	--
20. 공무원수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	명	20.-----	-----	--
			21.-----	-----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재정지출이 없어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 양준호(02-2133-5814)